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명칭	모펀드 삭제	모펀드 운용역	모펀드 투자 대상자산	환매 수수료	세제 혜택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○	○	-	-	-	-	-	-	-
2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12)
3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○	12)
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로스4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-
5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로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6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7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12)
8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9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-
10	미래에셋글로벌로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-
11	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12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-
13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9), 10), 11), 12)
14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-	-	-	-	-	-
15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-
16	미래에셋연금글로벌로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17	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18	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12)
19	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12)

20	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O	-	-	-	-	-	12)
21	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O	-	-	-	-	-	12)
22	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O	-	-	-	-	-	12)
23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O	-	-	-	-	-	12)
24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O	-	-	-	-	-	12)
25	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O	-	-	-	-	-	12)
26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O	-	-	-	-	-	9), 10), 12)
27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O	-	-	-	-	-	12)
28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O	-	-	-	-	-	12)
29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O	-	-	-	-	-	-
30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-	O	O	-	-	-	12)
31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	-	-	-	O	O	-	-	-	9), 10), 11), 12)
32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-	-	-	O	O	-	-	-	10), 11), 12)
33	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-	-	-	O	O	-	-	-	12)
34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(주식혼합)	-	-	-	O	-	-	-	-	-
35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O	-	-	-	-	12)
36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-	O	-	-	-	-	12)
37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-	O	-	-	-	-	-
38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	-	-	-	O	-	-	O	O	9), 12)
39	미래에셋배당과롱슛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	-	-	-	O	-	-	-	-	-
40	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O	-	-	-	-	12)
41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-	O	-	-	-	-	-
42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	-	-	-	O	-	-	-	-	12)
43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청년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	-	-	-	O	-	-	-	-	12)
44	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O	-	-	-	-	-
45	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-	O	-	-	-	-	-
46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-	O	-	-	-	-	-
47	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O	-	-	-	-	-

48	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49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0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1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2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3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4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5	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6	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-	○	-	-	-	-	10), 12)
57	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	-	-	-	○	-	-	-	-	-
58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2호(주식)	-	-	-	-	○	-	○	○	10), 12)
59	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-	-	○	-	○	○	9), 10), 12)
60	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-	○	○	10), 12)
61	미래에셋성장테마리밸런싱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-	○	-	9), 12)
62	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2호(채권)	-	-	-	-	-	-	○	○	9), 12)
63	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-	-	-	-	-	○	○	○	9), 12)
64	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-	○	○	-
65	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9), 10), 12)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삭제
- 3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환매수수료 삭제
- 6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- 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10) 법 개정사항 반영
- 11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11월 11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미래에셋글로벌주식EMP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) 모투자신탁 삭제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- <삭제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	11. 이 집합투자기구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 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" 미래에셋EMP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됩니다. 다만, 전환시점에 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환대상 모집합투자기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자동 전환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,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4일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여 2022년 11월 11일부로 "미래에셋EMP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이 변경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11. 이 집합투자기구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 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" 미래에셋EMP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됩니다. 다만, 전환시점에 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환대상 모집합투자기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자동 전환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,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4일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여 2022년 11월 11일부로 "미래에셋EMP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되어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.
[요약정보] 투자목적 및 투자 전략	2.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" 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, "미래에셋EMP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에 합산하여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4일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여 2022년 11월 11일부로 "미래에	2.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4일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여 2022년 11월 11일부로 "미래에셋EMP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"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되어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.

	셋EMP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예정으로 투자 전략 및 투자대상이 변경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모투자신탁 삭제(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4일 원본액이 15억을 초과하지 못함에 따른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변경)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모자형 구조] - 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[모자형 구조] - <삭제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- 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 <삭제>
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(1) 투자전략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 - <삭제>
제2부. 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- 미래에셋메타버스체인경제EMP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 <삭제>

3)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육진수	박경륜(책임), 주종륜(부책임)
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육진수(책임), 김건중(부책임)	박경륜(책임), 오준혁(부책임)
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육진수	박경륜(책임), 주종륜(부책임)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-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-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
-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
-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-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---	--	---

-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
-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청년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-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 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 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4. 종류C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7. 종류F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p>[A, A-e, AG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 [C, C-I, C-e, F]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	<p>환매수수료 없음</p>

-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<p>제39조 (환매수수료)</p>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 90일미만:이익금의 30% 2. 종류AG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 90일미만:이익금의 30% 3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4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5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6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7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8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9. 종류C-V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10. 종류S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 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p>[A, AG] 30 일미만:이익금의 70% 90 일미만:이익금의 30% [C-e] 90 일미만:이익금의 70% [C1, C2, C3, C4, C-I, C-V, S] 90 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	<p>환매수수료 없음</p>

-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, 30일이상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, 30일이상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, 30일이상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4. 종류C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5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6. 종류CG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7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8. 종류C-W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AG] 30 일미만:이익금의 70%, 30 일이상 90 일미만:이익금의 30%	환매수수료 없음

	[C, C-e, CG, C-I, C-W] 90 일미만:이익금의 70%	
--	---	--

-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4. 종류C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CG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7. 종류S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8. 종류C-I 수익증권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<환매수수료>	<u>[A, A-e, AG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u> <u>[C, C-e, CG, S, C-I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---------	---	----------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2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5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7. 종류CG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8. 종류I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<환매수수료>	[C1, C2, C3, C4, C5, C-e, CG, I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---------	---	----------

-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. 30일이상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. 30일이상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. 30일이상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4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7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8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p> <p>9. 종류CG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. 30일이상90일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10. 종류C-I 수익증권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u>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11. 종류F 수익증권 <u>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12. 종류S 수익증권 <u>9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, A-e, AG, CG] 30 일미만: 이익금의 70%. 30 일이상 90 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 <u>[C1, C2, C3, C4, C-e, C-l, F, S]</u> <u>90 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
6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4. 나. 과세 (4) 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	-가입기간 <u>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</u> <u>지</u>	-가입기간 <u>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</u> <u>지</u>

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73</u>	<u>22.28</u>
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1	1	<u>26.1</u>	<u>26.92</u>
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2	2	<u>23.02</u>	<u>18.65</u>
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5	5	<u>0.77</u>	<u>1.15</u>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	2	2	<u>23.92</u>	<u>23.9</u>
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2호(채권)	<u>4</u>	<u>5</u>	<u>5.54</u>	<u>0.85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2호(주식)	2	2	<u>24.82</u>	<u>24.73</u>
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2.51</u>	<u>12.77</u>
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5.19</u>	<u>5.55</u>

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 가방법 (1) 평가방 법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(<u>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

	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<u>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</u>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<u>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/u>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
--	---	---

10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④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④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

		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<u>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 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11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<u>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- 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u><삭제></u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박경륜 본부장

2) 주요경력

(04년~09년) 골드만삭스증권 리서치

(09년~17년)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부문

(17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

2. 운용현황(2022.10.31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22-08-01	244

3. 운용성과(2022.10.31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글로벌퀄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5.04	-	-	0.48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- 1) 성명: 주종륜 팀장
- 2) 주요경력
 - (07년~08년) 미래에셋증권
 - (08년~13년) 미래에셋자산운용
 - (15년~15년) Allard Partners
 - (16년~19년) Briarwood Chase Management
 - (19년~20년) D&H투자자문
 - (20년~20년) 유니스토리투자자문
 - (20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

2. 운용현황(2022.10.31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글로벌밸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22-08-01	244

3. 운용성과(2022.10.31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글로벌밸리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5.04	-	-	0.48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오준혁 매니저

2) 주요경력

(16년~18년) 삼성화재해상보험/ 일반보험계리파트

(18년~21년) Credit Suisse증권/ Equity Research

(21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

2. 운용현황(2022.10.31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성과(2022.10.31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해당사항 없음